

#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sup>1)</sup>

사단법인 오픈넷  
손 지원

## 1. 서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 정보의 내용을 심의하는 제도다.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의 ‘사전적’ 검열 제도는 아니지만,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법적 판단 없이 표현물의 ‘내용’을 심의하여 유통의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표현물에 대한 행정검열로 기능하고 있다.

소수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성과 해악이 중대하고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는 물론, ‘유해성’ 등 광범위한 기준으로 인터넷상 표현물들을 검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인터넷상 정보들이 삭제·차단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수준의 온라인 행정검열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심의 제도는 인터넷상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아 문제된다.

## 2. 통신심의 제도의 헌법적 문제 - 심의 기준의 불명확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통위설치법”) 제21조<sup>2)</sup>는 방

- 
- 1) 2024 제13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 발제문
  - 2)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

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3호)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4호)’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sup>3)</sup>은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 등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제21조 제4호에 따라 소위 ‘불법정보’가 아닌 ‘합법정보’에 대해서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이유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보다 포괄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를 근거로 한 ‘시정요구’로 수렴하여 통신심의를 행하고 있다.

본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정보<sup>4)</sup>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4)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동 시행령에서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는 포괄적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어떠한 내용의 정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심의와 시정요구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심의대상·기준에 관한 판단을 모두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스스로 광범위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적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 보 통 신 에 관 한 심 의 규 정	
제 2 장 심 의 기 준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3.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3.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u>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u>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바. <u>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u>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이와 같이 심의규정에서는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한 정보들까지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으로서 나열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일명 ‘유해정보’들도 시정요구 방식의 단계적인 제한도 받음이 없이 재량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sup>5)</sup> 이에 따라 위원회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접근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되는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가 행해지고 있다. 즉, 정보의 종류별로 시정요구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접속차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는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정한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유해’정보, 불건전정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선량한 풍속 위반’, ‘폭력, 잔혹’, ‘차별, 비하’, ‘역사 왜곡’,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 ‘사회질서 혼란’ 등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국민이 볼 것과 안 볼 것을 결정하는 ‘정보 통제’와 ‘건전성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기준으로 한 유해정보 심의의 위헌성

이렇듯 추상적인 ‘유해성’, ‘불건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보를 검열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소위 ‘불온통신 규제’ 사건 - 헌재 2002. 6. 27. 99헌마480)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

5)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중략)…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중략)…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원리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도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은 위에서 본 명확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략)…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 결정에서는 인터넷 심의기준이었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의 위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sup>6)</sup>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청소년보호를

6)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일명 ‘불온통신’ 사건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합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중략)…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그 유통·관리를 규제하는 매체물이다. 여기에는 성인에게도 금지되는 음란물 같은 불법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인에게는 접근이 허용될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표현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개념의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에 대한 접근만 금지하여도 족할 표현물도 불온통신에 해당되어 규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표현물은 청소년의 접근으로부터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것이 음란물에 이르지 않는 한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현물들도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온통신이라 하여 규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중략) …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헌재 1998. 4. 30. 95헌가16) 환기하여 둔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현재 방통위설치법상 ‘건전한 통신운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기준은 매우 추상적, 자의적인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3. 통신심의 제도의 헌법적 문제 - 방심위의 법적 성격, 구성의 문제

#### - 방심위의 행정기관성

방심위의 모호한 법적 성격도 문제다. 방심위는 공식적으로는 민간독립기구로 분류

되고 있고 스스로도 민간독립기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방심위를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방심위의 제재 결정이나 통신심의 시정요구도 행정처분이라 천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포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피고(방심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법 제26조 제4항). 그리고 국가로부터 피고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포된다(법 제28조, 제29조). 이는 종래 피고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던 구 전기통신사업법(2007. 1. 26. 법률 제 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등)

결국 방심위는 행정기관이며,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는 ‘행정기관’이 인터넷상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금기시되는 제도이다.

헌법적으로 표현물에 대한 행정검열이 금지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행정기관은 태생적으로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고, 행정기관의 표현물 심의는 정부에 비판적인 합법적인 표현물들을 억제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남용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적으로 금기시되는 것이다.

‘유해성’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기관이 정보의 ‘불법성’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유통을 금지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역시 종국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오류가능성, 즉 합법적인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게 존재한다. 또한, ‘규제기구’로서의 성격, 정체성 때문에 보다 규제주의적인 시각에서 심의 대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도 높다.

#### - 정치적 구성의 문제

방심위의 구성은 정치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 추천 6인, 야당 추천 3인이라는 정치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고 여당 성향의 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여 의사결정권을 쥐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친정부적인 방향의 정치 심의가 행해질 위험은 더욱 높고, 이러한 우려는 아래에서 검토할 바와 같이 실제 문제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4. 문제 사례들

##### ○ “2MB18nomA” 계정명에 대한 시정요구

2011년 4월, 방심위는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유해정보에 해당된다고, ‘과도한 욕설’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했다. 2008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물 다수에 대한 삭제의 시정요구를 내렸다.<sup>7)8)</sup>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심위는 시정요구된 게시물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방심위는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2월,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7)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위법", 미디어오늘, 2008. 7. 2.

8) "광고주 압박글 '무분별' 삭제 논란", 한겨레, 2008. 7. 8.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광고주 목록 등의 게시글은 합법 정보임에도 통신심의 제도의 위헌성의 한 측면, 즉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 합법적인 게시물이 약 7개월간 차단되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다음(Daum)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 사용으로 시멘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09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대상으로 올라온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15건 중 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sup>9)</sup>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위의 게시글의 내용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공개된 사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공익적 문제제기였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행정법원은 위의 시정요구에 대해 게시물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sup>10)</sup>

#### ○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구<sup>11)</sup>

2009년 1월 2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Daum) 아고라-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전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김문수 전 지사는 방통심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이에 대해 삭제를 결정하였다.

####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시신 사진에 대한 시정요구

방심위는 제41차 통신심의소위(2014. 7. 24.)와 제45차 통신심의소위(2014. 8. 7.)

9) "방통심의위 인터넷 글 삭제, 편법 논란", 한겨레, 2009. 4. 28.

10) 서울행정법원 2010.2.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11) "인터넷 검열, 방통심위는 빅브라더", 지디넷코리아, 2009. 4. 29.

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정보 총 86건을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임을 이유로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 의결하였다.

해당 시신 사진은 시신이 사망한 지 채 20일이 안 되었다는 경찰 발표에 비해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상의가 말려 올라가고 다리가 곧게 펴져 있어 인위적인 개입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하고 있었다.

국민이 사회적 이슈를 직접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자유, 그리고 이를 통한 알 권리의 실현과 연결되는 가치 있는 정보들을 단순히 ‘혐오’스럽고 ‘유해’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첫 시정요구인 제41차 의결은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의 유포를 확인하고 경위를 수사중이라는 발표와 함께 통신소위원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어 15건이 처리된 것인데, 불법정보가 아님에도 단순히 잔혹·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또한 본 안건 심의과정에서 삭제에 찬성한 위원 중 일인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실질적으로 수사 공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 ○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정치 심의<sup>12)</sup>

심의규정 중 ‘사회질서 위반’, ‘사회 혼란 야기’ 조항(제8조 제3호 카목)은 국론에 반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가장 문제적인 심의규정이며, 실제로 정치 심의 논란의 중심이 되는 심의규정이다. (또한 본 심의규정 위반으로 심의하는 게시글은 대부분 경찰청의 요청으로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시사 이슈들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인터넷 게시글들을 본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하고 있다. 세월호 및 사고 구조 지연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 천안함,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 사드(THAAD)의 인체 유해성을 언급한 계

12)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6

시글 등이 본 규정을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제적 심의가 있었다. 2020년 3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되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이는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험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 12. 9. 제38차 통신소위원회에서는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8건을 접속차단 결정했다. 이 유튜브 동영상들은 ‘주권방송’, ‘새날’ 등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영상으로, 주로 ‘천안함의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된 것이 아니라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주장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동영상들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동영상’으로,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 위반 및 ‘명예훼손’ 정보로 접속차단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만든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약 45초 분량의 쇼츠 영상을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시정요구 결정했다. 가상으로 꾸민 영상임을 적시하고 있고, 내용상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하였을거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에 이는 풍자적 표현물이며,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담고 있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표현물임에도 방심위는 차단을 결정했다.

#### ○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요구

법원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0도3810 판결.)라야 한다고 하여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단순히 북한발 정보, 북한을 미화하는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심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한 관련 보도, 학술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라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T 기술 분야에 대한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IT 정보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 북한 언론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발표의 진위를 따지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이 다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 유명 외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였다. 결국 법원에서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방심위는 북한의 관광지, 교육기관, 과학기술, 금융기관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북한 여성, 소녀가 출연하여 북한의 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형식의 송아, 유미 등의 계정, 채널을 차단 결정하였고, ‘친근한 아버지’라는 제목의 김정은 찬양 동영상도 차단 결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한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게 보낸 연대사에 대해서도 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 차단 결정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원에서는 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 ○ ‘대통령 지각체크’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시정요구

2024. 1. 8.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을 따라가며 지각을 체크하는 내용의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도 인지할 수 있는 공개된 내용으로 특정 지

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나 차량 행렬의 현재 위치 및 예상되는 목적지 등을 언급한 것만으로 동선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일정 언급도 대통령실 홈페이지 공개 일정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국가기밀’, ‘비밀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주 내용인 본 동영상을 차단한 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감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심의로 평가할 수 있다.

#### ○ 기타 ‘불법’ 판단 오류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사례들<sup>13)</sup>

포쉐어드라는 파일 공유 웹사이트를 저작권 위반으로 차단한 사례, 레진코믹스 웹툰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하였다가 철회한 사례도 있다.

#### ○ 동성간 키스 장면 웹드라마에 대한 시정요구

2016년 3월 22일 방심위는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방심위는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당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서도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13)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6

## 5. 통신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 제언

### 1)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이양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결정은 법원의 명령 필요하도록 개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심의제도는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함께 작용하여 사실상 검열로서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기관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온라인상의 정보 통제, 표현물 규제를 하도록 하는 통신심의 제도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의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맡겨야 한다.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능을 유지하고 싶다면, 방심위 기관의 설치·운영 구조를 바꾸어 행정기관적 성격을 버리고 진정한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해악이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정보의 경우에는 신속한 차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불법성 판단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라는 충돌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봄이 상당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원’의 명령 혹은 민간기구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저작권 침

해 정보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법정보의 삭제, 차단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심의 기준, 심의 대상 정보의 명확화와 축소 - 불법성이 명백하고 해악이 중대한 불법정보로 한정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심의 기준의 설정을 방심위에 전적으로 일임한 것과 다름없다.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어느 수준에서 보장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며, 방심위로 하여금 불법성이 없는 합법정보까지 과도하게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행정의 적절성, 효율성과도 연결된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20만건의 정보를 심의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2022년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심위는 86차례 통신소위를 열어 약 20만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86차례 열린 통신소위에서 평균 18분 동안 2434개 안건을 심의했다.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든 시간이 평균 0.5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개별적 심의 안건 정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법적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나 정치적인 사안만 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방심위가 불법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과도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불법정보 심의 역시 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현재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심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상 불법정보’ 자체도 너무나 광범위하다.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도 심의할 수 있고, 나아가 ‘기타 범죄 교사·방조’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

2011년 프랑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열

거된 ‘불법정보’의 유형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의사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동 조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들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열거된 사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행정심의회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제도인만큼, 행정기관에 의한 선제적 표현물 검열은 사법부의 불법 여부 판단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명백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통신심의 제도를 개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통신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 통신심의의 기준을 한정, 축소하여 위헌적 심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를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차단할만큼 불법성이 중대, 명백하고 해악이 급박하고 심대한 정보-아동청소년성착취물, 디지털성폭력물, 기타 국민의 신체, 재산에 명백하고 급박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불법정보 등-로 한정하여 합리화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이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 3) 위원 구성 방식의 변경

정치권 추천 인사들은 본인을 추천한 정부나 정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인 심의를 할 위험이 높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물의 내용을 검열하고 제재하는 기관은 정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방심위 위원 구성 방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의 정부, 국회 측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유관기관, 전문가 단체 추천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추천 기관, 단체의 지정 권한 역시 위촉권자에 의해 남용될 수 있으므로, 위촉권, 추천권 등 위원 구성과 관련된 권한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독립된 민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임명, 위촉에 있어 이들의 검증 절차와 동의를 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의 정수를 대

폭 늘리고, 전문성을 보증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심위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표현물, 미디어에 대한 검열(심의), 제재 결정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 중대한 법적 지위에 걸맞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활동이 적절히 감시·견제될 수 있는 수단(-예를 들면 기관장 역시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준하는 인사절차를 적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기타

유해정보 심의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방심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유해’정보 심의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불법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방식을 삭제, 접속차단과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조치의무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그 밖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접근만을 제한하는 조치의 시정요구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면서 행정권의 자의적 심의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 밖에 최소한 통신심의 제도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침해성 정보, 유해정보 심의신청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고위공직자의 심의신청은 모두 각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거나 내부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끝>